

# 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행정자치위원회 이승미 의원

-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,  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 
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승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 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생애전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더욱 다양해지고  
있으며, 특히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은  
고용불안과 사회적 고립, 돌봄 부담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 
그 어느 계층보다도 체계적인 생애재설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
□ 이에, 본 개정안은 이들 계층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형평성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제6조의4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신설하여

▲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▲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▲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.

□ 모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며,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